

전임교원임용심사내규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「교원인사규정」 제9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전임교원의 재임용,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) ①재임용 대상자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로 한다. 단, 정년보장을 위한 재임용 심사 신청은 임용 기간 내 3회 이내로 한다.(의과대학 임상전임교원, 교육전담교원, 산학협력전담교원 제외)

②승진임용 대상자는 직급별 승진소요연한에 도달한 자로 한다.

③정년보장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
1.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는 교원(의과대학 임상전임교원, 교육전담교원, 산학협력전담교원 해당)
2. 교수로 신규임용 후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
3. 부교수 재직 4년 이내의 기간 중 소정의 연구실적을 충족한 교원(의과대학 기초의학 전임교원, 연구전담교원 포함)
4. 삭제
5. 삭제
6. 삭제

제3조(임용시기) ①교원의 재임용은 매 학년도 3월 1일 또는 9월 1일에 행한다.

②교원의 승진임용은 매 학년도 3월 1일 또는 9월 1일에 행한다.

③교원의 정년보장임용은 부교수 승진 임용일을 기점으로 매 학년도 3월 1일 또는 9월 1일에 행한다.

제4조(재임용,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심사절차) 재임용,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.

1. 재임용,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대상자는 임용기간(승진 대상자는 직급 체류기간) 동안의 심사자료(본인 기술서 포함)를 소정기일 내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2. 총장은 별표1의 심사기준에 의거 소정의 연구실적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.(단, 전담영역별 전임교원에 대한 심사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)
3. 총장은 재임용,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과 해당 임용기간(승진임용 대상자는 직급 체류기간)동안의 교수업적 및 근무상황자료 등을 소속 학장에게 전달하고 재임용,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심사평정을 의뢰한다.
4. 학장은 대학인사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임용, 승진임용, 정년보장임용 대상자의 연구·교육·봉사·기타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심사평정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인비로 제출한다.
5. 교수 승진 시 총장은 교수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.

제5조(재임용 소명절차 등)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시 재임용이 부적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총장은 해당 교원에게 소명 기회(서면 또는 출석)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총장은 계약임용기간 종료 2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제6조(임용 심사) ①임용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심사하여야 한다.

1.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술 또는 창작활동
 2. 교육 역량과 실적
 3. 봉사활동
 4. 산학협력활동
 5. 기타 업적(수상, 서훈, 표창 등)
 6. 교육관계법령의 준수, 기타 전임교원으로서 품위
- ② 전임교원의 임용심사 중 연구실적물에 관한 사항은 제11조 내지 제12조를 따른다.

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평가의 항목·비중·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심사기준) ①재임용 대상자의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.

②승진임용 대상자의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.

③정년보장임용 대상자의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.

④재임용, 승진임용 또는 정년보장임용을 위한 연구실적물 배점기준은 별표2와 같다.

⑤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, 전담영역별 전임교원의 임용심사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⑥단과대학에서는 교원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자체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
⑦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임용교원은 임용기간 중 개별계약에 따른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, 그 세부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전적대학 재직경력 인정) ①승진대상 교원으로서 전적대학 동일직급 재직경력이 있는 자는 승진소요 연수에 이를 합산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전적대학의 재직경력을 인정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전적대학 해당 직급 체류기간동안의 연구 실적을 본교 연구실적 기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.

제9조 삭제

제10조 삭제

제11조(연구실적물 인정범위 등) ①별표2의 ‘국내 B’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 중 성균학술 목록상 국내 A급 외로 분류된 학술지만 인정한다.

②별표2의 ‘국제전문학술서적 초판’, ‘국내전문학술서적 초판’ 및 ‘전문학술번역서 초판’은 인문·사회계열 및 예술대학 교원 중 이론분야 교원에 한해 교원연구실적인증위원회와 대학인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실적 인정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심의대상 서적에 대한 전문학술지의 서평(또는 Book Review 논문)이 첨부되어야 한다.

③제2항의 교원연구실적인증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총장, 대학원장, 소속 학장, 산학협력단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평교수 3인 이하로 구성(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)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심사일 현재 게재 예정인 연구실적은 게재확정일이 재임용, 승진임용 또는 정년보장임용 예정일 전일 이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게재예정증명서 등을 첨부하되 임용기간 내 발표된 원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인정하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⑤예술대학의 창작, 실기발표 등 연구실적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에게 심사의뢰할 수 있다.

제12조(연구실적 인정) ①주저자(책임저자 또는 제1저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당해 논문 또는 저서 등에 주저자로서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기된 경우와 해당 교수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.

②실적물은 본교 임용기간 중 본교 소속이 명기된 실적만을 인정한다.

③동일한 연구실적에 대하여는 중복평가하지 아니한다.

④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5조의3제4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연구실적 인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⑤게재예정 연구실적물은 임용기간 내 발표된 원본과 일치하여야 하며, 상이할 경우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내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내규 시행과 동시에 「교원재임용 및 승진임용내규」와 「교원정년보장임용내규」는 이를 폐지한다.

③(적용례) 제5조의 규정은 2002. 1. 1 현재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하여만 적용하며, 재임용여부 통보 시기가 2002. 9. 1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내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례) 제4조제3호는 우수업적 부교수로서 정년보장임용자, 2000학년도 이후 신규임용자 및 승진임용자의 차기 승진심사 시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내규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11조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시기) 개정내규는 2005년 9월 1일 이후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 후 차기 임용(승진, 재임용)시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은 2005년 9월 1일 이후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 후 차기 임용(승진, 재임용)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개정내규는 2011년 9월 1일 이후 신규임용 교원에게 적용되며(HK교원은 2011년 6월 30일 이후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)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개정 내규는 2011년 8월 31일 현재 조교수로서 차차기 임용(승진, 재임용)시부터 적용한다. 단, 2011년 10월 1일자 승진임용자와 2011년 9월 1일자 재임용자는 종전 내규를 적용한다.
- 2011년 8월 31일 현재 재직자의 차기 임용(승진, 재임용)시는 종전 내규를 적용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내규는 2017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이 내규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원의 임용기간 및 임용 심사 기준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.

제3조(다른 규정의 개정) 본 규정 이외 제규정에서 「교원재임용·승진임용·정년보장임용내규」로 표기된 것은 「전임교원임용심사내규」로 개정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